

천주교광주대교구

Archdiocese of Gwangju

문서번호 : 천광교-관리국-24-076

시행일자 : 2024. 12. 26

수신 : 교구 사제, 제 단체장

참조 : 본당 사무장, 담당 직원

주임신부		사목회장	
보좌신부		분과장	
담당수녀		분과장	
사무장		분과장	
접수일자		처리결과	

제목 : 2024년도분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환급신청 안내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교구 법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본당(공소 포함) 및 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교구 법인명의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예금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본당(공소 포함) 및 단체

2. 신청 요령

가. 본당(공소 포함) 및 단체에서는 예금만기(종도해지 등) 리스트를 작성하여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파악하여 미발급 된 영수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법인관련 서류요청서(☑금융기관관련-☑기타: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나. 금융기관마다 발급에 따른 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다. 표지(첨부1)와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은 우편 등기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첨부2)는 파일 그대로 첨부하여 그룹웨어(관리국-장지영)로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 본당 및 단체는 중요문서에 대해 반드시 별도(사본) 보관합니다.

3. 주의 사항

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법인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여 접수합니다.

(단, 지급일자가 같은 합계 금액 중 1,000원 미만을 포함해야 끝자리가 0이 되는 경우는 포함)

나. 공소는 관할 본당에서 안내 후 공소 명으로 별도 접수합니다.

다. 원천 징수영수증 지급일자(2023년 1월~12월)를 꼭 확인합니다.

4. 환급 방법

국세청에서 환급되는 대로(매년 6월경) 법인세와 선급 지방세가 표지에 기재된 예금계좌 번호(법인명의 계좌만 환급 가능)로 각각 송금될 예정입니다.

5. 신청 기간 엄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누락 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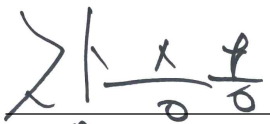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 표준 신고의 특례)

②법 제62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2.18.>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예산편성·업무지침서(계시관-모든 게시함) 78~79쪽을 참고 바랍니다.

- 첨부 : 1. [서식] 법인세 환급신청 표지
2. [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끝.

천주교 광주대교구
관리국장


장 승 용 신부

담당 장지영

차장 박종국

관리국장 장승용 신부

6199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 <http://www.gjcatholic.or.kr>

전화 (062)380-2823

/ 팩스 (062)380-2806

/ gwanni2823@nate.com

/ 공개